

2025년 한-중 IP SOLUTION 지원기업 모집공고

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연수구, 서구 소재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을 위한 현지 IP 분석 및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, 중국 수출을 진행(준비) 중인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4월 7일

인천지식재산센터장

1. 사업개요

- 지원내용 : 중국 IP 권리화 및 현지 IP 분석 등
- 지원대상 : 연수구, 서구(본사)소재의 중국 수출(예정)중인 중소기업
- 지원방법

1) [A모듈] 중국 IP 권리화

- 지원내용 : 국내 출원된 IP에 대한 중국 개별국 출원 비용
- 세부지원방법
 - 특허, 상표, 디자인 모두 해당
 - 대리인수수료 및 번역료, 관납료 등 출원 소요비용만 해당(등록비용 지원 불가)
 - PCT 국제출원 지원 불가(기출원된 PCT의 중국 진입은 지원 가능)
 - 단, 마드리드 상표 또는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은 가능
 - 기업이 A모듈에 신청하는 경우,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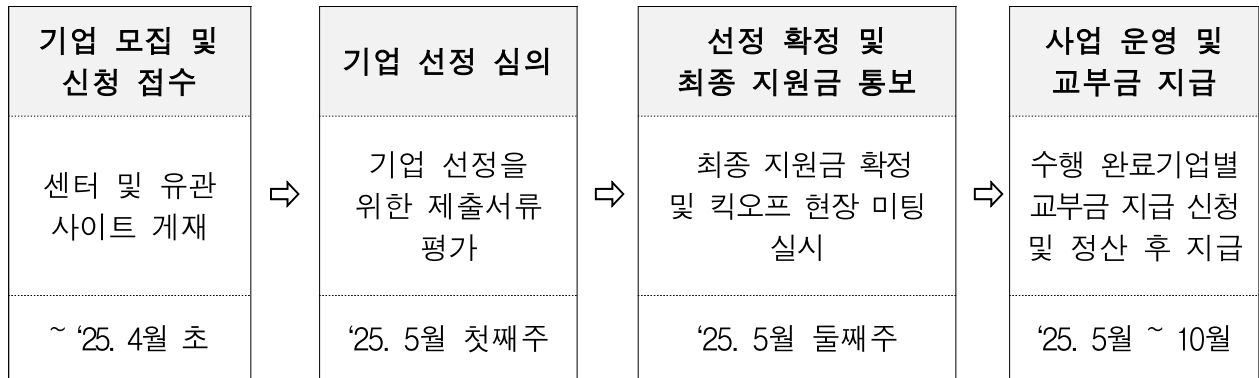
2) [B모듈] 중국 IP 분석 및 권리화

- 지원내용 : 국내 출원된 IP 관련 중국 특허 분석 및 개별국 출원 비용
- 세부지원방법
 -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 특허 분석 결과에 따른 중국 개별국 출원 1건 지원 포함
 - 특허만 해당(상표, 디자인 해당 X)
 - 대리인수수료 및 번역료, 관납료 등 출원 소요비용만 해당(등록비용 지원 불가)
 - PCT 국제출원 지원 불가(기출원된 PCT의 중국 진입은 지원 가능)
 - 기업이 B모듈에 신청하는 경우,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
□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(기업분담금 : 소기업 10%, 중기업 30%)

※ 지원금은 '25년 인천지식재산센터 국내외권리화지원사업의 해외 출원비용 기준 단가(특허 700만원, 상표 250만원, 디자인 280만원) 내의 범위에서 선정기업의 사업 필요성 및 예산현황에 따라 최종 지원금 차등 지급

□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



- (지원금 확정) 지원기업 선정 시, 예산 현황 및 선정 과제에 따라 지원한도 이내에서 기업별 최종 지원금 확정
- (착수회의) 선정기업 대상 수행 과제 협의 및 사업수행 절차 안내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키포프미팅 실시
- (협력기관 선정) 선정기업은 협력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 수행 - 거래중인(혹은 거래 예정인) 특허사무소 선정 가능
- (사업 수행) 기업별 사업 수행 후 소요비용 先지급(기업→협력기관) 後 지원금 교부 신청(기업→센터)
- (지원금 교부) 지원금 신청 접수 건에 한하여 매월 사업비 정산 후 교부금 지급(센터→기업)

2. 수혜기업 선정

- (선정방법) 제출 서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
 - 사업성, 기업 역량, 과제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평가

구분	선정기준
평가항목	추진 과제의 사업성
	중국 진출을 위한 준비 정도 및 글로벌 역량
	추진 과제 필요성(시급성)
	사업지원의 실효성
가점 항목	국내 등록 권리의 우선권 주장
	최근 3년 이내('22~'24) 중국 누적 수출실적(원화 기준)

- (우선지원) 신청 과제가 중국 내 IP 침해 혹은 분쟁가능성이 있는 경우, 우선 선정 및 지원(단, 관련 증빙 제출 필수)

3. 신청 방법

- 모집기간 : 2025. 4. 7(월) ~ 4. 28(월)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jaehyuk314@incham.net)
- 문의처 : 이재혁 책임연구원 (032-810-2884)
-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	비고
필수 제출	1. (붙임1)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1부	
	2. (붙임2) 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1부	
	3. (붙임3)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	
	4. (붙임4) 지원금 반납 서약서 각 1부	
	5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	6. 국내 출원 증빙서류(출원서 또는 출원번호 통지서) 1부	
	7. (소기업만 제출)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 -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- 중소벤처24 사이트에서 발급	미제출 시, 중기업부담금 적용
	8. (해당 시 제출) 중국 내 분쟁 이슈 증빙 등	양식 무관
가점 서류	9. 우선권 주장 국내 권리 등록증 1부	미제출 시, 가점 미적용
	10. 중국 수출 실적 증빙 1부	